

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 내용

(1) H은 2014. 4. 8.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약 20일간 ○○푸드시스템에서 AG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도시락 배달기사로 근무하였고, ○○푸드시스템의 직원이었던 I는 H이 퇴사한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차량의 도시락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2) H, I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하루 총 8시간(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는데, 위 H, I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 피고인의 지시로 오전 6시 30분경 또는 7시경에 출근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종합유통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한 뒤 오전 10시 30분경에 ○○푸드시스템 사업장에 도착하여 본래의 도시락 배달 업무를 한 후 오후 17시경에 퇴근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울산 남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H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하루 8시간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하였고,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I가 오전 6시 내지 8시부터 오후 15시 내지 17시까지 하루 8시간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각 출근카드(이하 '이 사건 출근카드'라고 한다)를 첨부·제출하였다.

3. 법원 판단 - 유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보조금유용, 행정소송,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